

전주지방법원 2016. 4. 19 선고 2016가단181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7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8,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토지 357㎡ 중 같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경량철골조 단층 창고 건물 115.70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판사남해인